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2. 15 선고 2018가합11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임채웅, 윤정노,
이인창, 김은미

피 고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 변호사 조창권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대 3,02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7. 12. 15. 접수 제26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 1) 원고(1937.생)는 2016. 10. 24. 사망한 망 D(192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E(1962.생, 여), F(1964.생, 남), G(1966.생, 남), H(1968.생, 남)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이며, I(1960.생, 남)은 망인의 혼인 외 자이다.
- 2) F는 현재 대학교 병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 3) 망인은 생전에 학교법인 J을 설립하였고, 한약방, 간호학원,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였다.
- 4) 원고는 학교법인 J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10. 31. 사임하였고, 이후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 중 장남인 F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0. 8. 14.까지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재산 출연과 피고의 설립

- 1)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상장주식 등 합계 약 8,800,000,000원의 금융자산을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 2)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인 피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7. 10. 31. 피고가 개설할 요양병원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유한회사 K로부터 전남 무안군 C 대 3,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9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7. 11.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원고는 2017. 11. 10. 이 사건 토지, 예금 4,700,000,000원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현금 890,000,000원(이하 예금과 현금을 통틀어 ‘이 사건 금융자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보통재산으로 각 출연(이하 ‘이 사건 출연’이라고 한다)하였다.
- 4) 피고의 발기인 창립총회가 2017. 11. 17. 개최되었고, 원고가 발기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망인과 원고의 성명에 따라 피고의 명칭을 ‘B’으로 정하였으며, F의 처인 L이 피고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기로 하였다.

5) L은 2017. 11. 20. 전남도지사에게 피고의 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 12. 11. 피고가 설립되었다.

6) 피고는 2017.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은 피고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 중이다.

7) F와 L은 2018. 11. 15. 협의이혼을 하였다.

다. 원고의 출연재산 등을 둘러싼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1) E, G, H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금융자산이 피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F에게 귀속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2) E, F, G, H은 2018. 1. 11. ‘F가 설립하려는 요양병원에 원고가 기부하였거나 기부하려고 하는 2,800,000,000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므로, F는 1년 안에 E, G, H에게 각 700,00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원고, E, G, H은 2018. 10. 23.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금융자산과 F가 원고로부터 가져간 미화 약 800,000달러는 모두 망인의 상속재산이므로, 이중 원고, E, G, H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F에게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8. 11.경 ‘F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금융자산을 피고에게 출연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F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20. 1. 28. F에 대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8. 11. 20.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다른 자녀인 E, G, H과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F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출연을 하였다. 그런데 F가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출연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 1) F는 2017. 4.경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을 포함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1,692,954,462원으로 산정하여 목포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2) 목포세무서장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10. 31. F에게 신고를 시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3)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8. 4. 5.부터 2018. 7. 1.까지 망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망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M과 원고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7.경 증여세 387,935,525원, 상속세 125,129,584원, 법인세 133,925,069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 4) 원고, E, G, H은 2018. 12. 18.경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고,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원고는 2018. 12. 19. 1,526,794,390원, E은 2019. 2. 8. 1,049,881,070원, G은 2019. 1. 8. 1,043,928,790원, H은 2018. 12. 28. 1,041,816,690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관련 민사소송 등의 경과

- 1) I은 2018. 1. 12. 원고, E, F, G, H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018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2020. 8. 31.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고, 이에 대해 I이 2020. 9. 11. 서울고등법원 2020브2140호로 항고를 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 2) I은 2018. 9. 21. 원고, E, F, G,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445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 3) E, G은 2019. 9. 9.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086호로 원고가 출연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금융자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가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인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 I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추후 상속재산을 E, G, H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는 F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출연을 하였는데, 원고는 F의 기망에 따라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출연을 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출연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금융자산 5,5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의 기망으로 인해 원고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출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학교법인 J의 이사장과 학교법인 N 및 재단법인 O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연 당시 공익법인인 피고에게 재산을 출연할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속세 등의 세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출연을 한 후 다른 자녀인 E, G, H이 이 사건 출연을 문제 삼기 전에는 피고 또는 F에게 이 사건 출연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다.

③ 원고는 2018. 11. 7. 원고의 자녀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F와 통화를 하면서 원고가 출연한 재산 중 일부를 E, G, H에게 주라는 말을 하였을 뿐,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출연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④ 원고가 망인과 함께 학교법인, 장학재단, 실버타운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같은 여러 공익사업을 해 왔고, 원고가 피고의 요양병원 신축 부지를 물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원고의 지인이 추천한 업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공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피고의 설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망인이 생전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유지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출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현재 계속 중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해 F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임의로 분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금융자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분배의 방법 및 액수 등은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금융자산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E, G, H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녀 간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윤민, 판사 김달하, 판사 신호승